

연구논문

한국적 시민경찰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

최종술

시민경찰학교(Citizen Police Academy)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천적 프로그램으로서 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협력치안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실정에 적합한 시민경찰학교의 모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시민경찰학교의 이념과 목적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국의 시민경찰학교 사례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현재 전국 각 경찰서별로 개설하여 실시되고 있는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민경찰학교 모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시민경찰학교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운영체제, 교육내용,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적 시민경찰학교의 모형을 제시한다.

주제어 : 시민경찰학교, 지역사회 경찰활동

1. 서론

최종술은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의대
학교 법·경찰학부
경찰학 전공 조교수
로 재직중이다.

cjs2634@dongeui.ac.
kr

오늘날 사회의 복잡다양화 및 전통적 기본질서의 해체로 범죄에 대한 대응과 안전문제 해결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지역규범과 가치에 토대를 둔 '맞춤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찰의 새로운 치안전략과 목표가 된 것이다(경찰청, 2001: 49~54)

경찰의 역할도 과거의 규제·통제위주의 '질서경찰'보다는 어렵고

힘든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는 ‘보호·봉사경찰’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제는 국민이 경찰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 경찰의 법집행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의 지위로 격상되었고, 경찰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 품질 치안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경찰은 주민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경찰사안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문제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상담·지도·안내하고, 여타 행정기관과 유기적 협조 속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철학은 21세기 한국경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지역주민을 지역치안의 한 주체로 또는 동반자(*Partnership*)로 인정,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나 관심을 파악하여 그 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최우선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천적 프로그램으로서 시민경찰학교(CPA, *Citizen Police Academy*)를 활성화한다면, 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협력치안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00년도부터 전국 각 경찰서별로 시민경찰학교를 개설하여 민·경 협력치안 기반을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실정에 적합한 시민경찰학교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경찰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시민경찰학교의 이념과 목적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 시민경찰학교의 사례로서 미국의 5개 경찰서 시민경찰학교에 대해서 살펴본다. CPA의 목적, 교육내용,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미국에서의 시민경찰학교는 198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미국 전역에 걸쳐 많은 경찰서에서 개설, 실시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대표적 사례를 고찰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각 경찰서별로 개설하여 실시되고 있는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다. 즉, 전국 각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실태를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시민경찰학교 운영실태, 교과과정, 사후관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운영체제, 교육내용,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해 본다. 이를 통하여 보완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설정에 적합한 한국적 시민경찰학교 운영체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시민경찰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Citizen Police Academy의 이론적 배경

1) 시민경찰학교의 이념적 기초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미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경찰학교의 이념적 기초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문제, 환경문제, 공해문제, 폭력, 매춘, 에너지 문제 등이 사회문제화되었고, 미국 시민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펴기 시작했다. 시민의 범죄신고, 정보제공, 그리고 도보순찰에 의한 친근감의 향상 등이 경찰의 검거율과 치안질서 유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질서유지 및 사회갈등 해결, 사회봉사 등으로 경찰기능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경찰의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순찰차량에 의한 경찰활동에서는 기동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단절과 경찰 조직의 고립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의 해결과 환경적 필요에 의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출현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였다. (1)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의 반응에 대한 재평가, (2) 범죄 진압자로서의 경찰상에 대한 재평가, (3) 지역주민과 관련된 질서위반에 대한 관심의 집중, (4) 경찰활동의 동반자로서 시민과의 유대강화, (5) 지역사회 문제에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강화, (6) 문제해결적 경찰활동과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성원으로서 경찰지위의 재정립 등이 새로운 경찰활동이 출현하게 된 기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Walker, 1995: 179).

요컨대, 증가하는 범죄율을 억제하고 경찰과 사회를 재통합하려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실패는 곧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추세를 이끌어 낸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하나의 철학(*Philosophy*)이지 전술(*Tactic*)은 아니다. 그것은 경찰활동에 대한 사전적이며(*Proactive*), 분권화된 접근법이다.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으며, 또한 지역 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책임을 전체로 보며,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하며, 그 문제들의 근원적 원인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Radelet & Carter, 1994: 60).

Goldstein(1979)에 의하면,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에서 “경찰은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지역주민들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눈에 쉽게 뛰고, 자주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의 관심을 나누며 지역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

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4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 (Dunham and Alpert, 1989: 422~423).

첫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인하여 이전의 지역사회가 더욱 단일화되고,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한층 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고, 범죄와 무질서는 협동적 노력을 통하여 더 잘 통제되고, 전체적인 사회통제가 더욱 엄하고, 더욱 일관되고, 더욱 널리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관념적 (*ideological*) 신뢰의 체제이다.

둘째, ‘프로그램적’이다. Alderson(1992)이 지적했던 것처럼, 경찰은 경찰전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의 친근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공포를 누그러뜨리고, 경찰의 존재와 접근가능성에 의해서 지역사회 주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이며,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를 지닌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 양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에서 지역사회로의 참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의 선을 장려하려고 노력하는 사전적 활동 (*Proactive Activities*)이다.

셋째, 실용적이다. 그것은 현재의 경찰관행과 상반된다. Wetheritt (1986)는 영국에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영국 경찰활동의 관행에서 보여지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모든 유형의 시민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일치되게 반응할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범죄 통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배타적 통제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새로운 실용적 경찰은 지역사회 내의 범죄문제의 성격에 관하여 의견을 나눌 때에도 시민과의 일방적 하향식 의사소통을 피한다.

넷째, 일련의 프로그램적 요소와 조직적 구조이다.

Skogan(1995: 87)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다음의 일반적 원리들을

따른다고 한다.

첫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 사이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을 분권화하고 순찰방향을 재설정한다.

둘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광범위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에 전념 한다.

셋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이 지역 문제들이 무엇인지와, 그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민요구들을 반영한다.

넷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조직과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그들 스스로 범죄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요컨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독특하게 확인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철학과 관계가 있다. 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기능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려는 계속된 시도로 특징짓는다. 대부분 그러한 운동은 (1) 범죄예방에의 전념, (2) 시민의 경찰감시, (3) 경찰활동의 시민에 대한 책임, (4)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맞춰진 경찰 서비스, (5)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강화하는 계획에 중점을 두었다(Swanson, Territo & Taylor, 1998: 15~16).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론과 생각들을 행동과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모든 개념들은 세 가지로 요소들로, 즉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Strategic-Oriented Policing)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의 첫 번째 요소는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다. 여기서 경찰은 확인된 문제영역들에 대해서 경찰자원들을 재분배하고 전통적 경찰활동 및 절차들을 이용한다.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의 목적은 범죄적 요소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지

역사회를 교정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에 그 기초를 확립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Oliver, 1998: 48).

전략적 경찰활동이란 개념은 경찰국의 전문적 범죄진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즉, 전략적 경찰활동의 목적은 여전히 효과적 범죄통제이다. 전략적 경찰활동은 향상된 순찰기술 및 함정수사를 활용한다. 또한 범죄와의 싸움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웃감시협회, 재물표시(*Marking Property*)를 이용하며, 그리고 경찰은 피해방지 방법에 관해 자문을 한다(Wallace, Roberson & Steckler, 1996: 273).

②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 Neighborhood-Oriented Policing)

이것은 지역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조장하기 위해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의사소통 라인을 열어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것에는 경찰-청소년 소프트볼 리그, 지역사회 내 소규모 경찰서(*Mini-Police Stations*), 또는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역사회로 이주하는 것이 포함된다(Oliver, 1998: 48~49).

③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 Problem-Oriented Policing)

Goldstein(1979)은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이라고 이름 붙인 개념을 통하여, 경찰은 사건지향적(*Incident-Oriented*)이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이어야 한다고 했다. 즉, Goldstein은 경찰은 너무나 협소하게 특정한 사건들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그 대신 이러한 반복된 사건들을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지향적 접근은 경찰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더욱 체계적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Roberg & Kuykendall, 1993: 111).

이러한 방법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무엇이 범죄와 사회 무질서의 원인인가를 결정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책들을 마련하면서, 가장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기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조 노력이 포함된다(Oliver, 1998: 49~50).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요소들은 실제로는 함께 수행되어야만 하는 상호 관련성 있는 프로그램망이다. 전략적 경찰활동 요소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수행되는 방법을 분명히 해준다. 많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문제지향적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문제해결에 있어 지역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는 많은 경우들에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의사소통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요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세 가지 요소들은 상호 의존한다(Oliver, 1998: 50).

2) Citizen Police Academy의 이념과 목적

(1) 시민경찰학교의 유래와 개념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도시화, 익명화, 개인의 원자화로 인하여 사회통제기능이 상실된 현대사회에서 경찰만으로 치안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2000년도 발생범죄 중 전체 범죄의 57%, 형법범의 경우 68.7%가 주민신고에 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을 보면(경찰청, 2000)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지역주민을 지역치안의 한 주체로 또는 동반자로 인정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나 관심을 파악하여, 그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나가고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최우선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주민이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통찰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치안을 말한다. 이는 과거의 법 집행 위주의 소극적 임무에서 벗어나 경찰이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적극적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통적인 경찰의 범죄대응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목표는 (1)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항상 국민의 곁에 있고, (2) 국민의 필요와 여망에 부응하며, (3)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치안을 국민과 더불어 공동생산하는 것이다. 즉, 경찰활동의 중점을 통제와 규제에서 보호와 봉사로 전환하는 것이며, 국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의 제반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하는 것이다.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과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과 시민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시민경찰학교의 유래는 영국에서 비롯되었는데, 영국경찰이 경찰의 법집행 활동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경찰야간학교' (*police night school*)라는 이름으로 1977년에 시작되어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확대되어 미국에서는 Orlando시 (Florida주) 경찰서에서 1984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이와 같은 시민경찰학교의 개념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대규모 또는 소규모 경찰관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Gainesvillle시 (Texas주), Bellingham시 (Washington주), Springfield시 (Illinois주), 그리고 Lakewood시 (Colorado주)의 시민경찰학교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즉, 시민경찰학교는 미국 전역의 수백 개 시와 군 (*counties*)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시민과 법집행 경찰관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2) 시민경찰학교의 목적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찰서 간의 의사소통 통로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경찰활동의 형태로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시민경찰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경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Understanding through Education*), 시민들에게 유익한 법집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민들에게 경찰서의 조직구조와 업무, 활동 등에 대해서 교육함으로써 시민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은 훈련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경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은 그들의 이웃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경찰관과 경찰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지를 보내줄 것이며,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를 이루는 데 일조하게 된다.

또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경찰관에 의하여 실시함으로써,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정책이나 절차에 관한 공공정보를 알려주는 기회가 됨으로써 대 주민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많은 갈등이 단순히 경찰에 대한 오해로부터 야기된다고 볼 때, 시민경찰학교를 통한 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경찰학교는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경찰 간의 보다 나은 이해, 의사소통,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의 실천적 프로그램으로서 시민경찰학교는 어떤 지역사회의 범죄를 줄이는 데 중요하고 실질적 역할을 한다. 교육을 통한 이해를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시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얻어내고,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개설한 것이다. 시민경찰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수료생들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죄문제 등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다. 또한 수료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들을 자신과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미국의 Citizen Police Academy 사례

1) SAN ANTONIO시 경찰서의 경우¹⁾

(1) 배경

San Antonio시 경찰서에서는 11주간의 시민경찰학교를 비롯하여 시민교육과 시민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는 1994년 3월에 처음으로 개설하여 6월에 마침으로써 최초의 수료생 41명을 배출하였다. 2000년 12월 현재까지 1,057명의 수료생을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출하였다. 열렬한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으로, 1년에 4회의 시민경찰학교 정규과정이 이루어지는데, 1월, 4월, 7월, 10월에 각각 시작된다.²⁾ 1개 교육반의 인원은 40명으로 제한된다. 시민경찰학교에의 입학은 San Antonio시에 거주하는 21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는 경력조회 등을 통해 선발된다.

(2) 시민경찰학교의 목적

시민경찰학교의 목적은 San Antonio 시민들에게 San Antonio시 경찰서의 조직구조와 업무, 활동 등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것이다. 시민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은 훈련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은 그들의 이웃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경찰관과 경찰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줄 것이며,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를 이루는 데 일조한다.

(3) 시민경찰학교의 교육과정

11주간의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은 주당 3시간씩 야간에 실시된다. 교육은 San Antonio시 경찰훈련학교에서 실시된다. 시민경찰학교의 교육내용은 San Antonio시 경찰서 조직과 구조에 대한 설명, 신

입경찰관의 모집과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San Antonio시 경찰서의 다양한 부서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임무, 거기에 범죄대처 요령, 지문채취방법, 소방장구 사용요령 등에 대해서도 실습한다.

교육담당자는 경찰학교의 교관, San Antonio시 경찰서의 특정 부서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그리고 경찰서 외부기관의 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한다. 시민경찰학교 교육생들은 순찰경찰관들과 동행하면서 순찰활동을 참관할 기회를 가지며, 8시간 동안 담당구역 순찰경찰관과 함께 순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교육생들은 모임을 통하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부여되며, 휴식시간중에 간식이 제공되며, 수료식을 계획하고 교육기간중의 출석에 대하여 서명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제공된다.

11주째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생들이 수료식을 가지게 되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수료한 수료생들과 함께 시민경찰학교 수료생협회(CPAAA, *Citizen Police Academy Alumni Association*)에 등록하여 활동하게 된다.

(4) 시민경찰학교의 수료생들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압도적이며, 참가 지원이 매회마다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경찰학교 1회 수료생들은 시민경찰학교 수료생협회(CPAAA)를 만들어서 2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열며, 또한 시민경찰학교 수료생들은 교육현장을 실제로 견학하고 강의를 듣기도 한다. 또한 시민경찰학교 수료생에게는 Municipal Court Warrant Drives, Blue Santa, McGruff Crime Prevention Caravans, telephone surveys, Cellular on Patrol classes 등을 포함한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서 경찰서 내의 많은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5) 참가지원

시민경찰학교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서는 San Antonio시 경찰서 산하 기관에서 얻을 수 있으며, 신청양식을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시민경찰학교 담당자는 모든 지원서를 검토해서 경력을 체크하고, 편지로 통과된 지원자에 대하여 초청장을 보내거나 참가 가능한 다음 회를 알려준다.

(6) 기타: 주간 시민경찰학교(Daytime Citizen Police Academy)

San Antonio시 경찰서는 11주간의 야간 시민경찰학교뿐만 아니라, '주간 시민경찰학교'(Daytime Citizen Police Academy)도 개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8주간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San Antonio시의 고령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고령층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고령층의 시민들이 편한 시간으로 조정하고 있다.

'주간 시민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은 시 전역에 걸쳐서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센터나 경찰서 산하기관 등 고령층이 참여하기에 보다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주간 시민경찰학교'의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므로 노인들이 참석하기 위하여 야간에 자동차 운전을 하고 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비록 교육과정이 노년층에게 맞추어져 있지만 '주간 시민경찰학교'는 정규 야간경찰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추후에 시민경찰학교에서는 청소년 시민경찰학교(Youth CPA)를 발전시켜서 청소년 캠프를 개설할 예정이다.

2) Austin시 경찰서의 경우³⁾

Austin시 시민경찰학교는 1987년 1월에 개설되어, 43회에 걸쳐서 1,349명의 시민이 수료하였다. 시민경찰학교는 Austin시 경찰서의 직무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12주간의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Austin시 경찰서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12주간 열린다. 교육은 매주 경찰서 내의 일정 부서별로 열린다. 주제는 경찰훈련, 통신, 경찰견, 순찰, S.W.A.T. 그리고 경찰관 모집 등이 있다. 교육은 강의, 설명, 견학, 그리고 10시간간 순찰경찰관들과 함께 동행, 순찰하는 것 등이 있다.

시민경찰학교의 슬로건은 '교육을 통한 경찰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through Education*)이다. 교육목표는 경찰에 대한 오해나, 왜곡 등을 없애고, 경찰관과 시민과의 화합과 친밀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경찰학교 수료생들에게 경찰서의 업무활동에 관한 보다 나은 인식을 도모하고,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수료생들은 수료 후, 그들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기를 바란다.

(1) 교육목적

일련의 교육과정을 경찰관에 의하여 실시함으로써,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정책이나 절차에 관한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시민경찰학교의 기원

이 프로그램은 1984년 Florida주 Orlando시에서 시작되었다. Orlando시는 미국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최초로 개설한 시이다.

(3) Austin 시민경찰학교 개설의 계기

경찰서에 대한 보다 많은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많은 갈등들이 단순히 경찰에 대한 오해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것이 시민경찰학교 개설의 계기가 되었다.

(4) 교육일시

연간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입교생들은 Austin시 경찰서의 다양한 관련시설에서 매주 화요일 밤에 교육을 받는다. 경찰관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시간은 총 35시간 정도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5) 시민경찰학교 참가자격

입교생들은 최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Austin시 지역에 직장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건축가, 은행원, 주부, 학생, 퇴직자, 교사, 동네 친목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3) Denton시 경찰서의 경우⁴⁾

(1) 시민경찰학교의 목적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사회와 Denton시 경찰서 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개방하고자 13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Denton시 경찰서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협력을 통한 경찰활동의 형태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바램에서 시작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교육기간 및 시간

13주 동안 실시되며, 주당 하루씩 야간에 실시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3) 교육일정(2001년 가을 교육일정)

2001년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실시한다(단, 추수감사절은 제외한다).

(4)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지역사회의 범죄통제에 대한 시민의 역할과 Denton시 경찰서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과정은 실제로 매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청소년담당 경찰관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통담당경찰관들은 교통법 규를 집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과 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수사담당경찰관은 Denton시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유형과 이를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이러한 교육내용은 경찰활동에서 시민과의 동반자로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 법집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5) 참가자격

Denton시에 살거나 직장을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경찰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형사사법기관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은 예외로 한다. 1개 교육반은 24명으로 제한하고 참가자는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서 사회단체, 문화단체, 교육단체, 경제단체 등 우리 이웃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이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한다.

(6) 참가신청

참가신청서는 Denton시 경찰서의 현관에 비치되어 있고, Denton 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E-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차기 교육과정은 교육시작 한 달 전부터 신청서를 받으며, 차기 교육과정에 인원이 많은 경우는 다음 회로 넘겨진다.

4) Evanston시 경찰서의 경우⁵⁾

시민경찰학교는 Evanston시 경찰서 업무활동에 대한 지식을 참석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12주간의 프로그램으로 1995년에 개설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일주일에 한 번 열리며, 일련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되며, 교육생의 수는 25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범집행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는 교육적이고 정보제공적인 프로그램으로서, Evanston시의 범집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찰서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교육생들과 함께 논의한다.

(1) 교육이념과 목적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경찰 간의 보다 나은 이해, 의사소통,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만드는데 있다.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은 어떤 지역사회의 범죄를 줄이는 데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전체 시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얻어내고,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수료생들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죄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서로 동반자적 관계로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다. 수료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들을 자신과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효과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개인적 관심을 가질 것이며, 자신들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을 원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이웃과 보다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로 유지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수료생들은 수료증, 수료를 기념하는 재킷, 단체사진 등을 받는다. 게다가 수료생들은 시민경찰학교 수료생협회(CPAAA)에 등록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것을 통하여 범집행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나아가 경찰서와의 보다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3) 일시와 장소

교육과정은 12주 동안 실시되며, 매주 1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된다. 첫 번째 교육과정은 Evanston시 경찰서에서 실시된다. 이후 모든 교육은 Evanston시 공립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

(4) 참가자격

교육생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출석을 해야 하는데, 다만 2번의 공식적 결석이 허용된다. 교육생의 수는 최대 25명 이하여야 한다. 각 교육생들은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교육에 참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4시간의 동행순찰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기간 중 통신센터에서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교육생에 대한 혜택

교육생들은 경찰서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교육받을 것이다. 교육내용은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서 보다 나은 인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교육생들은 경찰활동 문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설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치안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게 된다. 또한 이웃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받게

될 것이다. 교육생들은 수료 후에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경찰활동에 함께 참여,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도 있다.

(6) 교육내용(2001년 3월 8일부터 2001년 5월 24일까지)

교육사항을 보면, 견학 및 동행으로서 통신시설/911 신고센터 등에 대한 견학 및 동행한다. 교육생들은 담당구역을 순찰하는 경찰관과 동행하면서 경찰서의 순찰활동과 최일선에서 수행되는 경찰활동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생들은 911 신고센터의 활동과 시민신고에 대한 처리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교육기간 중 최소 4시간은 몇몇 순찰지역에 대하여 동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동행하여 순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순찰차, 안전장구 그리고 통신장비를 포함한 순찰지원장비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교육생들은 시민의 신고에 대한 대응을 경찰관과 함께 한다.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최소 3시간은 경찰서의 통신시설/911 신고센터에 대하여 참관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담당 경찰관들은 대응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며, 한층 강화된 911 신고체계, 경찰지령체계와 신고전화 접수 등과 함께 장비도 참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경찰학교의 주별 교육내용의 실례는 <표 1>, <표 2>와 같다.⁶⁾

표 1**1주차 교육내용(Week 1)**

1. 목표	이 기간 동안의 교육목표는 경찰서를 살펴보고 소개하는 것이다. 각 부서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무와 책임, 그리고 각 부서별 기초적 임무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경찰서 부서별 연례보고서뿐만 아니라 부서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 환영식	• 교육과정 소개
3. EVANSTON 경찰서의 역사	• 역대 경찰서장들 • 설립 이후부터 일어난 주요 사건들
4. 경찰서 소개	• 업무와 평가보고서 • 조직기구표 · 주요 업무기능 영역 • 개인별 업무와 근무처 편람 • 각 부서별 전화번호부 • 전체지령 체계도
5. 경찰서 투어	
6. 연례보고서	• 경찰서의 1년간 활동 • 업무와 범죄통계 · 변화된 모습과 비교
7. 유인물(교육자료)	• 조직기구표 · 전화번호부 · 연례보고서

표 2**2주차 교육내용(Week2)**

1. 목표	이 기간중 교육의 목적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주 검사가 어떤 사건을 추적, 조사하는 형사사법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게다가 실제사건에 기초한 모의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2. 검찰관의 역할	(1) 고소의 접수, (2) 책임의 인정
3. 민법과 형법 간의 차이점	
4. 재판제도	(1) 증거심문, (2) 예비심리, (3) 법정출석, (4) 판결
5. 수색과 압수에 관한 법률	
6. 형사사법제도에서 시민의 역할	
7. 모의재판	

5) Boise시 경찰서의 경우⁷⁾

(1) 목적

Boise시 시민경찰학교는 Boise시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 프로그램이다.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서 개설된다. 개설 목적을 보면, Boise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남녀 경찰관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Boise 시민들에게 법집행은 어떻게 하는가, 왜 하는가를 교육하며, Boise시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시민경찰학교는 교육기간 동안에 2개 유형의 강의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Boise시 당국과 Boise시 경찰서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2) 교육내용

시민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Boise시 경찰의 활동모습을 실제로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순찰절차·범죄수사, 마약, 생단, 범죄예방, 경찰훈련 등 많은 관련법규들이다. 또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순찰활동을 하는 기회를 가지며, 특수 훈련 등을 참관하게 된다.

Boise시 시민경찰학교의 교육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 교육과정은 동행참여, 특수 수사팀의 활동참관, 소방훈련 참관을 포함하여 총 11회로 구성된다.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면 수료식을 거행한다.

(3) 수료생들의 활동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수료생들은 Boise시 시민경찰학교 수료생 협회에 등록이 되고, 이후 경찰활동과 관련된 법집행 교육 등에 참여하게 된다. Boise시 수료생협회는 월 1회 모임을 가지며, Boise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의를 듣거나 토론의 기회를 가진다.

(4) 참가자격

18세 이상으로 Boise시에 살거나 직장이 Boise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Boise시 경찰서에 지원서가 비치되어 있다.

(5) Boise시 청소년 경찰학교(Youth CPA)

청소년 경찰학교의 경우, 교육일정과 참석연령을 보면, 2002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16세에서 17세까지로 하고, 2002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15세에서 16세까지로 한다. 교육장소는 Boise시 경찰서 훈련센터이다.

교육내용은 Boise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호신술, 방어기술, 경찰의 순찰절차·범죄수사와 탐문조사, 교통법규, 소방 시뮬레이션 훈련, 순찰경찰관과의 동행순찰 등이다. 비용은 무료이며, 청소년 경찰학교는 15세에서 17세까지여야 하며, Boise 시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한된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수료식은 금요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거행된다. 또한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의 하루는 Boise시 순찰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순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생들은 모든 교육에 참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시민경찰학교의 실태분석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부터 각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단위로 실시중에 있다. 지역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협력치안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경찰학교는 미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서 경찰관들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경찰활동 강의 및 경찰관과 함께 지역 범죄예방에 관하여 토의

하고 파출소, 112신고센터, 유치장 및 각종 경찰 단속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부산지역 시민경찰학교 교육기간은 주 1회, 야간 3시간씩 9~10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활동에 열의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수료 후에는 '시민명예경찰'로 위촉되어 각종 다양한 지역치안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000년 하반기부터 각 경찰서 단위로 운영,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연간 2개 이상의 경찰서에서 개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 방범과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경찰학교를 이미 개설, 운영했거나 개설 실시중에 있는 부산지역 3개 경찰서의 시민경찰학교 사례를 운영체제, 교과과정,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⁸⁾

1) 'A' 경찰서의 사례⁹⁾

(1) 추진배경

21세기 치안여건은 경찰력만으로는 효율적 대처가 곤란하며, 지역 치안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 지원책이 없어 사명감·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시민경찰학교 개설을 통한 민·경 협력치안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설하였다.

예컨대 개설일시 및 장소를 보면, 2001년도의 경우, 일시는 2001년 2월 22일~4월 26일 19:00~22:00(10주간)이고, 장소는 'A' 경찰서 직무교육장이며, 교육시간은 30시간(매주 목요일 3시간, 단 공휴일인 경우 수요일)이다.

(2) 교육대상 인원 및 참가자격

교육대상 인원은 36명이고, 시민경찰학교의 참가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불문한다. 또한 인격 및 행동 면에 있어 지역에 신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예방 및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특히,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및 파렴치한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인 중 참여희망자를 선발한다.

교육인원 선정은 각 파출소별로 2명씩 선정하여 총 36명으로 한다. 선정 대상자는 입교당일 제출서류로서 사진(3×4) 1매, 교육생 카드를 작성한다.

(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주차는 방범과 주관으로 교육과정안내 및 등록(2시간), 경찰서 치안여건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1시간)로 구성된다. 2주차는 경무관 주관으로 경찰임무·역할, 조직기구표, 계급체계 등(1시간), 경찰관련 법규교육(1시간), 그리고 청문감사관 주관으로 청문감사제도 소개(1시간)로 구성된다. 3주차는 방범과 주관으로 112지령실, 교통관제실 등 상설 방범기기 전시장 견학(3시간)으로 구성된다. 4주차도 방범과 주관으로 즉결심판절차, 기초질서 지키기, 주취자 안정실 운영, 청소년 범죄예방과 대책, 자위방법요령(3시간)으로 구성된다. 5주차는 교통과 주관으로 교통업무 소개 및 음주, 무인속도기 체험(3시간)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6주차는 수사과와 형사과 주관으로 형사 민원처리절차, 범죄통계 사례, 감식, 강·절도 가정폭력 처리절차, 과학수사반 견학(3시간)으로 구성된다. 7주차는 방범과 주관으로 파출소 현장실습(3시간)이 있고, 8주차는 경무과와 방범과 주관으로 각각 경찰개혁관련 비디오 상영(1시간)과 초빙강사의 강의가 있고, 9주차와 10주차는 모두 방범과 주관으로 민관 협력관련 방범현장 강의 및 캡스(기계경비) 견학(3시간), 설문조사 및 간담회, 졸업식(3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방법은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기능별 강사 선정, 강의 및 토의로 진행되며, 시청각 견학과 현장견학체험을 실시하고, 초청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한다.

(4) 교육수료자의 사후관리 및 대책

교육수료 및 관리는 먼저,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수료식과 다과회를 개최한다. 또한 수료생을 '시민명예경찰'로 위촉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또한 기념사진촬영, 모자·배지 등 기념품을 수여한다.

사후관리는 시민경찰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에게는 기수를 부여하고, 자율모임을 유도한다. 제1회 졸업생에 대하여 '1기'라고 명명하고 회장단을 선출한다. 2001년도부터 입교식 및 졸업식에 참석하도록 하여,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도록 한다. 졸업생 중 전문가, 강사 경력자를 초빙하여 강의하도록 한다. 또한 각종 경찰행사시 참석케 하여, 의견을 발표토록 하며, 방범공청회·세미나 등에 참석케 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특히 졸업생 모임을 치안봉사단체로 활성화하고, 청소년 선도 또는 자문위원, 즉결심판심사 자문위원, 검안으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월별 테마 선정, 각종 캠페인,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참여유도, 명예 파출소장 체험으로 자긍심 고취, 각종 경찰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수료식은 표창도 수여되는데, 표창대상은 경찰서별 1명이며, 시민경찰학교 졸업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된다. 또한 지방경찰청장 표창 1명과 경찰서장 표창 1명이다. 표창시기는 시민경찰학교 종료시(우수 수료생 1명 선정보고)이다.

(5) 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방범과장이며, 운영위원은 경무, 방범, 수사(형사), 교통계장, 파출소장 2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살펴보면, 시민경찰학교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교육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결정하며, 교과과정, 학교운영 및 부서별 협조·지원사항 등을 결정한다.

(6) 기타 행정사항

각 파출소장은 참가자격에 의한 교육대상 인원 2명을 선정, 2001년 2월 19일한 방범과에 보고하고, 홍보문을 배포토록 한다. 경무, 수사, 형사, 교통과장은 교육일정표에 의한 교관을 선정하고 교관은 교안을 작성하여 2001년 2월 19일한 방범과 제출한다. 경무과장은 경찰학교 개설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 수료기념품 준비 및 현장전학시 버스, 위촉장, 수료증 인쇄, 공로자에 대한 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등을 주관하고, 정보과장은 외래강사를 일정에 맞게 초빙하고 그 결과를 방범과에 통보한다.

2) 'B' 경찰서의 경우¹⁰⁾

(1) 추진배경

21세기 치안여건은 경찰력만으로 효율적 대처가 곤란하며, 지역 치안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 지원책이 없어 사명감·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시민경찰학교 개설을 통한 민·경 협력치안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개설일시 및 장소를 보면, 일시는 2001년 10월 18일~12월 13일 19:00~22:00(9주간)이고, 장소는 'B' 경찰서 2층 소회의실이며, 교육시간은 27시간으로서 매주 목요일 3시간(단 공휴일인 경우 수요일)이다.

(2) 교육대상 인원 및 참가자격

교육대상 인원은 24명이고, 참가자격은 20세 이상 남녀를 불문하며, 인격 및 행동 면에 있어 지역에 신망이 있는 자, 범죄예방 및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및 파렴치한 전력이 없는 자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인 중 참여희망

자를 선정하고 있다. 교육인원 선정은 총 24명으로서 각 파출소에서 2명(합 24명)씩 선정된다. 또한 선정대상자는 입교당일 교육생 카드 등을 작성한다.

(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보면, A 경찰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B 경찰서의 경우는 외부초청강사를 달리하고 있고, 견학 또는 현장실습 등에서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교육방법은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기능별 강사선정, 강의 및 토의, 시청각전학, 현장견학체험, 초청 강사초빙 교육 등이다.

(4) 교육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대책

교육수료 및 관리에서 수료식과 함께 다과회를 개최하고,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또한 기념사진촬영, 모자·배지 등 기념품을 수여한다.

사후관리는 졸업생에게 기수를 부여하고, 자율모임을 유도하는바, 1회 졸업생을 1기로 명명하고, 회장단을 선출한다. 2002년도부터 입교식 및 졸업식에 참석토록 하고, 선·후배간 친목을 도모한다. 또한 졸업생 중 전문가, 강사 경력자를 초빙하여 강의토록 하고, 각종 경찰행사시 참석, 의견을 발표토록 한다. 방범공청회·세미나 등에 참석토록 하여 정보를 교류한다.

특히, 졸업생 모임을 치안봉사단체로 활성화하여, 청소년 선도 또는 자문위원, 즉결심판심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월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각종 캠페인,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를 유도한다. 명예파출소장 체험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각종 경찰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표창도 수여하는바, 표창수여의 대상은 시민경찰학교 졸업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1명, 경찰서장 표창 1명씩 수여하고, 표창시기는 시민경찰학교 종료시로 한다.

(5) 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시민경찰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방범과장이고, 운영위원은 부청문관, 경무, 방범, 수사(형사), 교통계장, 파출소장 2명 이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지침 제정, 교육의 기본목표 및 방향, 교과과정, 학교운영 및 부서별 협조·지원사항 등이다.

(6) 기타 행정사항

각 파출소장은 참가자격에 의한 교육대상 인원 2명을 모집 및 선정한다. 청문감사관, 경무, 수사, 형사, 경비교통과장은 교육일정표에 의한 교관명단을 방범과로 통보하고 교관은 교안을 작성하여 방범과로 제출한다. 경무과장은 경찰학교 개설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 수료 기념품 준비 및 현장견학시 버스, 위촉장, 수료증 인쇄, 공로자에 대한 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¹¹⁾

3) 'C' 경찰서의 경우¹²⁾

지역주민과 경찰이 서로 이해하는 효율적 민경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시민경찰학교 졸업생 모임을 치안자원봉사단체로 활용하고 상호 치안 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개설한다.

(1) 기본방침

민경협력관계 증진 및 경찰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으로 시민경찰학교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경찰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수료 후 '시민명예경찰'로 위촉하여 지역치안 정보교류, 자원봉사 및 지속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시민경찰학교 교육 및 운영의 내실화, 관련 기능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경찰서에 '시민경찰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추진배경

21세기의 치안여건은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효율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민경협력치안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지역치안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 지원책이 없어 사명감, 전문성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경찰학교의 개설이 필요하다.

(3) 세부추진계획

개설기간은 10주간(예를 들면, 2001년 9월 5일~11월 14일)이며, 교육시간은 총 29시간으로 10주 동안 매주 1회 2~3시간(19:00~20:00간)이다. 장소는 C 경찰서 2층 소회의실이다.

교육대상(모집)을 살펴보면, 교육인원은 1회 20~30명 내외이고, 모집기간은 2001년 7월 1일~8월 25일로 되어 있다. 참가인원의 선정기준은 20세 이상 남녀를 불문하며, 인격 및 행동 면에 있어 지역에 신망이 있는 자, 범죄예방 및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및 파렴치한 전력이 없는 자이다.

강사선정은 각 과별 업무소개를 위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경찰관으로 선정하고, 자치단체장, 지역경찰학과 교수 등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4)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생에게 필요한 실무교육 중심

- 과출소 현장체험 · 교통음주단속, 과속스피드건 등 현장체험
- 경찰항공대 방문 · 해양경찰서 방문

둘째, 각 과별 경찰업무 소개(고소, 고발처리절차, 교통사고 처리절차 등)

셋째, 선배 시민경찰학교 졸업생의 경험 소개이다.

교육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

주차	주제	교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	주관 부서
1 (9. 5)	경찰서 소개 및 교육안내	1	교육과정 안내 및 등록	등록	담당자	방법
		2	입교식(경찰서장 인사말)	행사	방법계장	방법
		3	경찰서 및 부서업무 소개	강의	경무계장	경무
2 (9. 12)	경무, 청문, 감사업무	1	경찰민원서비스 소개	강의	민원실장	경무
		2	경찰장비 소개	강의	장비담당	경무
		3	청문감사관실의 업무소개	강의	청문감사관	청문 감사
3 (9. 19)	지방청견학	1	방법기기 전시장,	현장 견학	지방청	방법
		2	112지령실			
		3	교통관계센터 방문			
4 (9. 26)	방법업무	1	가정폭력, 청소년보호법, 유해업소단속 등	강의	여성청소년계	방법
		2	출업생경험 소개	강의	1기 회장	방법
		3	분임토의(지역별 조편성) -민경협력체제구축 -조별파출소장, 직원 1명 참석	토의	방법계장	방법
5 (10. 10)	경찰항공대 견학	주간	항공대가 하는 일 및 헬기탑승(장소소개)	현장 견학	항공대장	지방 청항 공대
6 (10. 17)	수사, 형사업무	1	고소, 고발사건 처리절차	강의	조사계장	수사
		2	중요사법 검거사례로 본 방법요령 및 협조사항	강의	형사계장	수사
		3	경찰의 과학수사	강의	과학수사반장	수사
7 (10. 24)	해양경찰서 견학	주간	해양경찰의 장비소개 및 함정 탑승-3시간	현장 견학	해양경찰	해양 경찰
8 (10. 31)	교통업무	1	교통사고처리절차	강의	교통사고반장	경비 교통
		2	현장학습(음주 및 과속단속)	현장 체험	교통지도계장	경비 교통
		3	파출소업무 및 방법활동	강의	파출소장	방법
9 (11. 7)	정신교양	1	외래강사초빙	강의	추후확정	방법
		2	안보교육	강의	보안계장	정보 보안
10 (11. 4)	수료식	3시간	교육평가(설문조사) 수료식(수료증, 기념품증정), 다과회	행사	경찰서장	방법

○ 교육기간: 9주(주 1회)

○ 1일 교육시간: 3시간(평일 19:00~22:00)

교육방법은 강의, 토의, 시청각, 견학,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재는 담당교관이 교안을 작성하여 방법계에 제출(교육생에게 별도 유인물 배포)하고, 교관 선정은 분야별 각 과장의 책임으로 교관을 선정한다.

(5) 교육수료 및 관리

교육수료시, 수료식과 함께 다과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촬영, 기념품(모자·배지 등)을 수여하며,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으로 자긍심을 고취한다.

사후관리로서, 1기 수료생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는바, 회장을 선임하여 교통캠페인 참석, 친목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자율적인 회장단 선출을 지속적인 모임으로 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1기 시민경찰학교 수료생들을 시민경찰학교 입교식 및 수료식에 참석케 하고, 선배 수료생의 체험소개로 선후배간 친목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일일파출소장, 교통캠페인, 공청회 등 경찰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토록 하고, 졸업생 모임을 치안봉사단체로 활성화하여 청소년 선도, 유해업소단속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한다.

한편, 홍보방법을 보면, 경찰서, 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인터넷 홍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지역 방송매체활용, 파출소 소식지 활용과 외근 경찰관을 홍보 요원화, 경찰서 앞 플래카드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표창수여 대상은 교육에 열의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에서 수여하고, 부산지방경찰청장 1명, 경찰서장 1명씩 표창(감사장)하고, 업무유공 경찰관 1명에 대해서 경찰서장 표창을 하고, 표창시기는 시민경찰학교 수료식 때 실시한다.

(6) 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시민경찰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방범과장이고, 위원은 경무계장, 방범계장, 형사계장, 교통지도계장, 파출소장 2명

이다.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보면, 입학선정 심사, 수료생 적격여부 심사, 시민경찰학교 운영과 교육의 목표 및 방향조언, 교과과정, 학교운영 및 부서별 협조·지원사항 등이다.

(7) 행정사항

각 과장은 책임하에 교관을 선정하고 교안을 작성 제출케 하고,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하여 시민경찰학교 운영과 입교생 모집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전 직원을 교양하며, 각과의 각종 행사계획수립시 졸업생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교관선정, 교안작성 등 시민경찰학교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경무과장은 우수수료생에 대한 표창수여, 현장견학시 버스 제공, 식수준비, 플래카드 제작, 다과회 준비 등 소요경비 지원에 협조 및 학교운영 전담직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 등을 실시한다.

방법과장은 시민경찰학교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각 과출 소장은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하여 외근 활동시 시민경찰학교 운영과 입교생 모집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전 직원을 교양한다.

5. 한국적 시민경찰학교의 모형

1) 우리나라 시민경찰학교의 보완점

시민경찰학교는 주민들에게 경찰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협력치안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료 후에는 '시민명예경찰'이 되어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등 각종 지역 치안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경찰학교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

면 이미 앞서 살펴본 시민경찰학교의 사례에 기초하여 세 가지 측면, 즉 운영체제, 교육내용, 사후관리상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운영체제

① 경찰서 주도의 운영체제

시민경찰학교는 그 유래가 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경찰업무와 법집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경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하게 되고 경찰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경찰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 필요로 하고, 주도로 이루어지는 교육운영체제가 오히려 시민의 불만과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부족할 때가 있고,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향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찰서 주도의 운영체제로 인한 일방향적 교육운영체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경찰서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경찰학교가 아니라, 경찰서 홍보용, 또는 홍보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경찰학교 졸업생들은 졸업생모임을 통하여, 경찰이 주도적으로 사후관리함으로써 친경세력으로 양성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경찰홍보용이라는 것과 친경세력화에 대한 우려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자칫 소위 친경 관변단체화될 수 있다.

② 개별 경찰서 단위 실시의 비효율성

현재의 시민경찰학교는 1개 경찰서 단위로 실시, 운영되고 있다. 교육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많고, 공통성을 가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의 교육내용과 중복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본 시민경찰학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부산지역 경찰서별 시민경찰학교의 교

육내용들을 보면, 견학프로그램 등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관할구역을 이웃하고 있는 경찰서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교육내용에서는 관할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가능하리라고 본다.¹³⁾

③ 연령 제한 및 야간개설로 인한 참여의 제약

시민경찰학교는 대부분 야간에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며, 그러나 야간에도 시간적 여유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간에 직장이나 기타 생업에 종사하고 일이 끝난 후인 야간에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야간에 개설한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야간에 개설되는 되는 경우에는 참여의 제약을 받는다. 즉, 주로 남자 성인위주의 30~40대가 참여하게 되어, 가정주부 등 여성과 노령층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소년은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교육내용

① 경찰업무 및 홍보위주의 일방향적 교육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 치안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과 협력하여 상호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시된다. 시민경찰학교는 시민과 경찰이 서로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며, 이런 모임을 통하여 주민의 요구와 불만을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민경찰학교의 교과목들을 검토해 보면, 경찰업무 및 관련제도의 소개와 현장견학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방식 자체가 교육생들에 대한 일방적 교육위주로 되어 있다.

② 외부 전문강사의 초빙

시민경찰학교의 교육내용이 경찰업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담당자가 강사가 된다. 이와 같은 실무중심의 교육내용과 설명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교육생들은 강의에 흥미를 잃게 되고, 형식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교수방법상의 미숙한 점 등이 지적된다.

(3) 사후 관리

① 수료생 모임의 성격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 등이 주어지고 시민경찰학교 수료생협회(CPAAA)에 가입한다. 이 회원들은 경찰서의 지원하에 보통 일년에 2번 이상의 모임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경찰업무 및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할 때, 경찰서에서는 이들 수료생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홍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 그리고 명예시민경찰로 위촉된다. 또한 경찰서가 주도적으로 수료생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하게 되는데, 회장을 선임하여 교통캠페인에 참석토록 하고, 친목 모임이 지속되도록 한다, 즉, 자율적인 회장단 선출과 지속적인 모임으로 친목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경찰학교 수료생의 시민경찰학교 입교식과 수료식에 참석하고, 선배 수료생의 체험소개로 선후배간 친목도모를 유도한다. 그리고 일일파출소장, 교통캠페인, 공청회 등 경찰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견 발표를 허용한다. 또한 졸업생 모임을 치안봉사단체로 활성화하여 청소년 선도, 유해업소 단속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는 경찰의 대 시민 이미지를 높이고, 경찰활동

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경찰서 주도의 사후관리가 시민의 자율적 참여라기보다는 시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은 홍보전략적 차원에서 시민을 이용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수료생 모임을 친경세력화하려는 의도를 경찰이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는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야기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료생 모임을 경찰이 의도적으로 친경세력화하거나 친경찰적 관변단체로 전락시킨다면, 시민경찰학교의 본래 취지까지도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2001. 9. 10)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시위진압에 명예시민경찰을 동원하거나 시민경찰학교 수료생들을 동원하여 참관케 하고, 이들을 Police Line에 배치하여 시위진압에 동원한다면,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경찰학교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자율적 모임의 '경찰도우미'로 양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경찰학교의 수료생들은 졸업 후 경찰자원봉사자로서 교통캠페인, 청소년 선도, 유해업소 단속, 일일파출소장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치안봉사단체로서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바로 '시민을 위한 경찰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명칭도 '경찰도우미'로 칭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찰도우미'란 경찰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경찰을 홍보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시자로서 시민의 불만과 의견을 경찰에게 요구하고, 경찰의 법집행 활동에 대한 공정한 감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경찰과 시민과의 갈등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소한 오해는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심화되면,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사소한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주민과 경찰 간 갈등의 중재자로서 '경찰도우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2) 한국적 시민경찰학교의 모형

(1) 민·경·학 공동운영체제

앞서 지적한 운영체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주도형 운영체제가 아니라, 민·관 공동운영체제, 또는 경·학간 공동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민·관 공동운영체제'란 경찰서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객관성과 현실적 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경찰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경우에는 시민경찰학교의 교육영역을 현재의 체제보다 세분화 함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민경찰학교의 교육 영역을 청소년선도 교실, 범죄예방 교실, 자율방범대원 교실 등으로 세분하는 경우, 청소년선도와 관련되는 단체, 예컨대 한국청소년연맹 등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경·학간 공동운영체제'란 경찰서와 일반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즉, 경·학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고, 지역 치안문제에 대하여 시민, 경찰, 대학 간 협조체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실무경험과 대학의 연구경험을 접목하는 경·학협력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찰 측에서는 실무교육이나 현장실습 등을 담당하고, 대학 측에서는 이론과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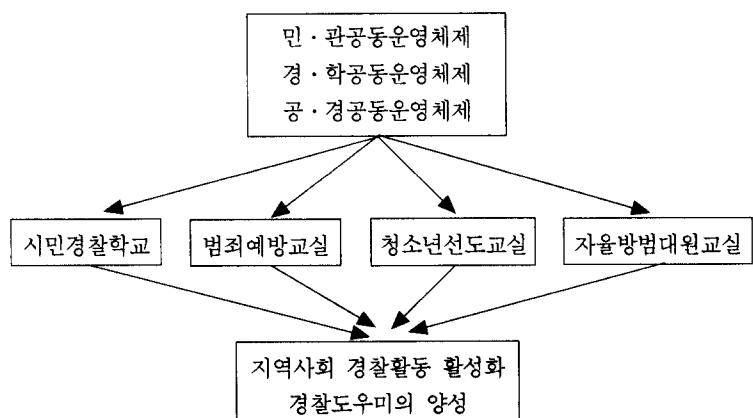
양 등을 담당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 홍보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경찰상 구축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동원, 2001: 11~12).¹⁴⁾

경·학간 공동 운영체제는 지역사회 지향형 경찰이라는 경찰개혁의 이념과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 및 봉사를 강조하는 시대적 조류와 요청에도 부응하는 것이며,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주도 홍보전략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식 시민경찰학교(CPA)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전환하여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치안유지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찰서와 다른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즉 부산광역시 또는 관할 구청과 공동으로 시민학교를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시민학교의 한 교육과정으로서 시민경찰학교의 범죄 예방교실 등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하면 먼저 대규모로 운영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한편, 야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참여에 제약이 있다. 즉, 주로 남

그림 1
시민경찰학교 모형



자 성인위주의 30~40대가 참여하게 되어, 가정주부 등 여성과 노령층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소년은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간에도 시민경찰학교를 개설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San Antonio시 경찰서에는 주간에도 개설하여 (DayTime CPA) 노령층과 가정주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는 야간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간에 실시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San Antonio시의 경우처럼 청소년 경찰학교 (Youth CPA)를 개설하여 시내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할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쌍방향적 교육내용

앞서 지적한 일방향적 교육내용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이 시민이 알고자 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의 요구와 불만이 무엇인지를 수렴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할 것이다. 경찰활동상황이나 업무소개 등의 홍보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의 요구나 시정사항을 듣고 시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쌍방향적 교육’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교육담당자에 대하여 교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케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특히,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외부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케 하거나, 사회교육차원에서 반드시 경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도 교육함으로써 참여시민의 흥미와 호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며, 자발적 참여유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대학이나 사회단체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첨가하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본다.

5. 결론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에는 직접적 참여자로서의 역할과 간접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시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의 고유한 업무, 예컨대, 위험의 방지, 범죄의 수사와 같은 업무에도 보조자로서의 시민참여를 통하여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 시민관계에서 민감한 업무의 영역에까지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면 역기능적 측면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법집행자로서의 경찰업무 수행에서 시민참여는 업무수행의 보조자적 역할로서 충분할 것이며, 더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라는 측면에서의 시민참여는 주도적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민참여는 민·경협력 치안체제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찰업무에의 시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가 단순히 전시·홍보차원의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경찰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입증된 영역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를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시민경찰학교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경찰서의 업무와 활동사항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경찰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시민에 대한 PR 기능을 시민경찰학교의 수료생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방적 홍보차원의 교육이나 형식적 업무소개가 아니라,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경찰서별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시민경찰학교는 미국의 시민경찰학교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에서도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방식이나 교육내용 그리고 사후관리에서는 아직도 한국적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반영된 것은 아니며, 시민의식의 미성숙도 이와 같은 한국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경찰학교는 경찰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홍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또한 ‘경찰을 위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주입식 교육을 실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열린 시민경찰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1. 'A' 경찰서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교육기간: 10주(주 1회), 1일 교육시간: 3시간(평일 19:00~22:00))

주차	주제	교시	교육 내용	강사	주관부서
1 (2. 22)	입학 및 등록 경찰업무소개	1	▪ 교육과정 안내 및 등록	방범계	방범
		2	▪ 경찰서장, 방범과장 인사말	경찰서장 방범과장	방범
		3	▪ 경찰서 치안여건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	방범과장	방범
2 (2. 28)	경찰조직 경찰관련법 청문감사제도	1	▪ 경찰업무·역할, 조직기구표, 계급체계 등	경무과장	경무
		2	▪ 경찰관련법규 교육	경무계장	경무
		3	▪ 청문감사제도 소개	청문감사관	청문감사
3 (3. 8)	현장견학	1	▪ 부산청 112범죄신고지령실		
		2	▪ 부산청 교통관제실	방범계장	방범
		3	▪ 상설 방범기기 전시장		
4 (3. 15)	방범활동교육	1	▪ 즉결사법처리 절차 ▪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	방범지도계장	방범
		2	▪ 소년경찰업무 소개 ▪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예방대책	여성 청소년계장	방범
		3	▪ 자위방범 및 범죄신고 요령	방범계장	방범
5 (3. 22)	교통단속 현장체험	1	▪ 교통민원, 교통사고 처리절차 및 사례 질의응답	교통과장	교통
		2	▪ 음주, 무인속도기 실습	교통 지도계장	교통
		3			
6 (3. 29)	형사절차	1	▪ 형사민원 처리절차(민, 형사의 구별) ▪ 경찰, 검찰, 법원의 역할	수사과장	수사
		2	▪ 강·절도, 가정폭력 사건 처리절차 ▪ 질의응답	형사과장	형사
		3	▪ 과학수사반 견학	형사과장	형사
7 (4. 4)	파출소 현장실습	1			
		2	▪ 파출소현장실습(도보순찰, 소내근무, 112 순찰 등 경찰관 합동 근무)	방범계장	방범
		3			
8 (4. 12)	경찰개혁홍보	1	▪ 경찰개혁 관련 비디오 상영	경무계장	경무
		2	▪ 초청강사 강의	방범계장	정보
		3			
9 (4. 19)	협력방범 현장체험	1	▪ 현장강의		
		2	▪ 캡스(기계경비업체) 견학	방범계장	방범
		3			
10 (4. 26)	교육수료	1	▪ 교육평가 및 설문조사	방범과장	방범
		2	▪ 수료식(수료증, 기념품 증정)	방범과장	방범
		3	▪ 다과회	방범과장	방범

2. 'B' 경찰서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교육기간: 9주(주 1회), 1일 교육시간: 3시간(평일 19:00~22:00))

주차	주 제	교시	교 육 내 용	주관부서
5 (11. 15)	교통단속 현장체험	1	▪ 교통민원, 교통사고 처리절차 및 사례 질의응답	교통
		2	▪ 교통단속(음주) 현장체험	교통
		3	▪ 음주, 무인속도기 실습	
6 (11. 22)	형사절차	1	▪ 형사민원 처리절차(민, 형사의 구별) ▪ 경찰, 검찰, 법원의 역할	수사
		2	▪ 강·절도, 가정폭력 사건 처리절차 ▪ 질의응답	형사
		3	▪ 범죄현장보존 및 범죄감식 실습	형사
7 (11. 29)	파출소 현장실습	1	▪ 파출소현장실습(도보순찰, 소내근무, 112순찰 등 경찰관 합동 근무)	방범
		2		
		3		
8 (12. 6)	경찰개혁홍보	1	▪ 경찰개혁 관련 비디오 상영	경무
		2	▪ 초청강사 강의	정보
		3		
9 (12. 13)	교육수료	1	▪ 교육평가 및 설문조사	방범
		2	▪ 수료식(수료증, 기념품 증정)	방범
		3	▪ 다과회	방범
1 (10. 18)	입학 및 등록 경찰업무 소개	1	▪ 교육과정 안내 및 등록	방범
		2	▪ 입교식 및 경찰서장, 방범과장 인사말	방범
		3	▪ 경찰서 치안여건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	방범
2 (10. 25)	경찰조직 구속절차 청문감사제도	1	▪ 경찰임무·역할, 조직기구표, 계급체계 등	경무
		2	▪ 유치장 견학 및 구속절차	수사
		3	▪ 청문감사제도 소개	청문감사
3 (11. 1)	현장견학	1	▪ 부산청 112범죄신고지령실 ▪ 부산청 교통관제실 ▪ 상설 방범기기 전시장	방범
		2		
		3		
4 (11. 8)	방범활동교육	1	▪ 즉결사법처리 절차 및 주취자 안정실 견학 ▪ 경범죄 처벌법 교육	방범
		2	▪ 청소년 보호법 제정 취지 및 소년경찰업무 소개 ▪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예방대책	방범
		3	▪ 자위방범 및 범죄신고 요령	방범

■ 주

- 1) 인터넷사이트 참조(<http://www.ci.sat.tx.us/sapd/cpa.htm>) .
- 2) San Antonio 시민경찰학교 개설일정

교육반	개시일자(년월일)	수료일자(년월일)
01~01	2001. 1. 16	2001. 3. 27
01~02	2001. 4. 10	2001. 6. 19
01~03	2001. 7. 10	2001. 9. 18
01~04	2001. 10. 3	2001. 12. 11

- 3) 인터넷사이트 참조(<http://www.ci.austin.tx.us/police/cpa.htm>) .
- 4) 인터넷사이트 참조(<http://www.dentonpolice.com/cpa>) .
- 5) 인터넷사이트 참조(<http://www.evanstonpolice.com/CPA/cpa.htm>) .
- 6) 교육내용 '4주차 교육내용(Week 2)' ~ '12주차 교육내용(Week 2)'은 (<http://www.evanstonpolice.com/CPA/cpa.htm>) 참고.
- 7) 인터넷사이트 참조(<http://www.ci.boise.id.us/police/cpa/cpa.asp>) .
- 8) 부산지역 A, B, C 경찰서의 '시민경찰학교 운영실시계획'을 참고로 하여 정리하며, 경찰서의 구체적 명칭은 표기하지 않기로 함.
- 9) 경찰서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따라 편의상 A, B, C 라는 명칭을 사용함.
- 10) B 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실시운영계획'을 참고로 정리한 것임.
- 11) B 경찰서 시민경찰학교 개설운영 안내문

▣ 시민경찰학교(Citizen Police Academy) 개설운영 안내

- 우리 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협력치안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개설 운영합니다.
- 시민경찰학교는 미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서 경찰관들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경찰활동 강의 및 경찰관과 함께 지역 범죄예방에 관하여 토의하고 파출소, 112신고센터, 유치장 및 각종 경찰 단속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교육기간은 주 1회(목) 야간 3시간(19:00~22:00) 씩 9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으로 지역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활동에 열의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료 후에는 각종 다양한 지역치안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2001년 10월 18일부터 B 경찰서에서 운영하므로 참여 희망시 B 경찰서 방법과 또는 관할 파출소로 문의하시고, B 경찰서 방법과로 신청하시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12) 'C' 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실시 운영계획'을 참고로 함.
- 13)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경찰서 단위의 실시가 아닌 인접 경찰서끼리의 통합실시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접근성(accessibility) 저하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일선 동사무소들도 상호 동일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경찰서 단위로 유사한 내용이 교육되고 있다는 점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각 경찰서가 교육프로그램에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별반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찰서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경찰서 홈페이지에 관할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예: 관내의 주요 치안상 문제, 지역사회의 범죄경향 및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등), 우리나라의 경찰서 홈페이지는 과연 각 경찰서가 자기 지역사회의 주민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한지 의심이 들 정도로 관할 지역사회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익명의 심사위원 심사평에서 발췌함).

- 14) 경·학이 공동으로 주도한 시민경찰학교는 이미 광주대학교와 전남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자율방범대원 교실을 실시한 바 있다(이동원, 『시민경찰아카데미 개요』(광주대학교 시민경찰아카데미, 2001)), pp. 11~12.

■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경찰대학. 2001. 『경찰학개론』, 경찰대학교 출판부.
- 경찰대학. 2001. 『한국경찰사』, 경찰대학교 출판부.
- 경찰청. 2001. 『21세기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세일문화사.
- 경찰청. 2001. 『21세기 한국경찰의 비전』, 대한 문화사.
- 기광도. 1995.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보환. 1998. “효율적 범죄통제를 위한 방범체계의 개선,” 『치안논총』.
- 김용환. 1998.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체적 활동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치안 연구소.
- 김충남. 1989.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0.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치안논총』.
- _____. 2001. 『경찰학개론』, 박영사.
- _____. 역. 2001. 『경찰과 지역사회』, 여명출판사.
- 남궁구. 1997.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략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동원. 2001. 『자율방범대원교육자료집』, 광주대학교 시민경찰아카데미.
- 이무영. 1998. 『수사전서』, 제일가제법령출판사.
- 이상안. 1996. 『신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 이윤호. 1999. 『형사정책』, 박문각.
- 이황우. 1996.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학회보』 제5호.
- _____. 2001. 『경찰행정학』, 법문사.
- 정진환. 1998.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 조병인. 1993. 《범죄대책론》, 한림원.
- 조병인. 1998.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 주학중 편. 1992.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치안연구소. 2000. 《제12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자료집》(2).

외국문헌

- A LAW ENFORCEMENT CHECKLIST: Important Steps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1997). *Community Policing Exchange*, November/December.
- Bayley, D. H. 1994. *Police for the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rroll, John. 1998. "Policing in the Information Age: The Return of the Professional Model," *the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1998 National Conference*.
- Chaiken, M. R. 1998. *Kids, Cops, and Communities*,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Davis, K. C. 1971. *Discretionary Justice: A Preliminary Inquiry*, Urbana: University.
- Dunham, Roger G., Geoffrey P. Alpert. 1993. *Critical Issues in Policing*, Illinois: Waveland Press, Inc.
- Goldstein, H. 1979. *Improving Policing: A Problem-oriented Approach*, Crime and Delinquency 25.
- Harris, R. H. 1973. *The Police Academy: An Inside View*, New York: John Wiley.
- Hensley, T. 1988. *Civilian Review Boards: A Means to Police Accountability*, Police Chief 55, No. 9.
- Hoffman, D. N. D. 1991. *Community Service Unit Information*, Arvada, Co.: Arvada Police Department.
- Leishman, Frank, Barry Loveday, Stephen P Savage. 1996. *Core Issues in Policing*,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Mastrofski, Stephen D., Robert E. Worden, Jeffrey B. Snipes. 1995. "Law Enforcement In A Time Of Community Policing," *Criminology Vol. 33*.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USA). 1989. *A Model of Community Policing: The Singapore Story*.
- Oliver, Willard M. 1998. *Community-Oriented Policing(A Systemic Approach to Policing)*, New Jersey: Prentice-Hall.
- Onnen, J. 1993. Oleoresin Capsicum, *Police Chief* 60, No. 5, pp.1~2.
- Roberg, Roy R., Jack Kuykendall. 1997. *Police Management*, Los Angeles. California: Roxbury Publishing Company.
- Radelet, Louis A., David L. Carter. 1994.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5th ed., New York: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 Roehl, J. A. et al. 1996. *National Process of Operation Weed and Seed*,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Rubinstein, J. 1973. *City Police*,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 Stone, Alfred R., Stuart M. Deluca. 1994. *Police Administration, An Introduc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 Swanson, Charles R., Leonard Territo, Robert W. Taylor. 1998.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Taylor, R. W. et al. 1998. *Core Challenges Facing Community Policing: The Emperor Still has no Clothes*,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Today 17(1).
- Walker, S. 1992. *The Police in America*, 2nd ed., New York: McGraw-Hill.
- Wallace, Harvey, Cliff Roberson, Craig Steckler. 1995. *Fundamentals of Police Administr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인터넷사이트)

- <http://www.dentonpolice.com/cpa>
- <http://www.ci.sat.tx.us/sapd/>
- <http://www.police.nashville.org/citizen>
- <http://www.ci.austin.tx.us/police/cpa.htm>
- <http://www.evanstonpolice.com/CPA/cpa.htm>
- <http://www.fcgov.com/police/citizen-academy.php>
- <http://www.newport-news.va.us/police/cpacad.htm>
- http://www.ci.pacifica.ca.us/CITYHALL/sub_cpa.html
- <http://www.ci.boise.id.us/police/cpa/cpa.asp>
- <http://www.stpaul.gov/depts/police/cpa.html>

Abstract

The Study on Citizen Police Academy in Korean Police

Jong-Sool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Citizen Police Academy in Korean Police and to suggest the methods for activating Citizen Police Academy in Korean Police.

To find the proper programs for Citizen Police Academy in Korean Police, I examined Citizen Police Academy of America. CPA of America has found the proper programs for the Community and is enforcing them. People there are much interested in their CPA and are taking part in CPA Program.

The problems of Citizen Police Academy in Korean Poli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blems pertaining to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Korean CPA

Second, the problems pertaining to education program in Korean CPA

Third, the problems pertaining to Citizen Police Academy Alumni Association (CPAAA) and CPA graduates.

Key Words : Citizen Police Academy, community policy, police administration